

# 「2023년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 사업」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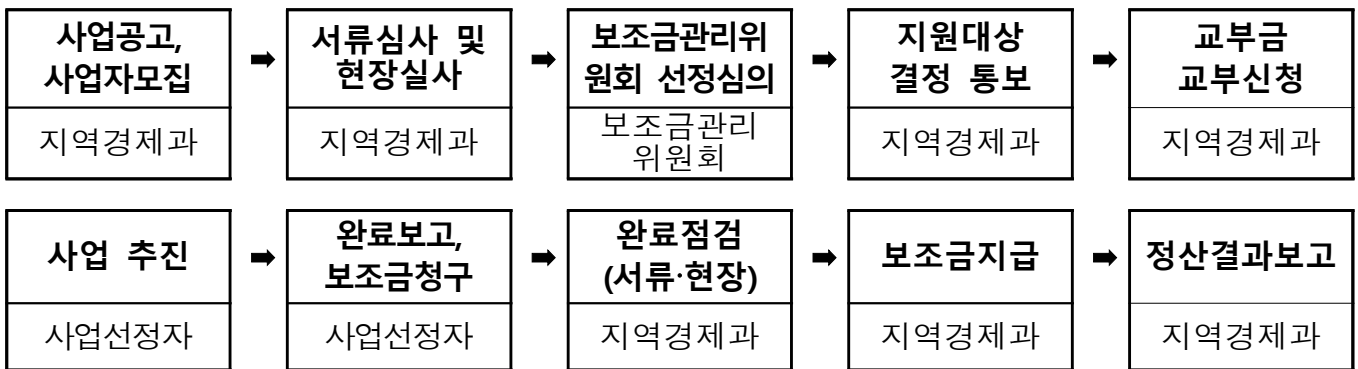
당진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「2023년 당진시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8. 7.

## 당진시장

### 1. 지원대상 및 규모

- 가. 사업명 : 2023년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 사업
- 나. 사업예산 : 금78,000,000원(금칠천팔백만원)
- 다. 지원규모 : 업소당 최대 600만원(자부담 20% 이상 必), 예산 한도 내 지원
- 라. 지원대상 : 관내 소상공인업체 13개소 예정
- 마. 추진절차



### 2. 지원 사업내용

지원 분야	세부 지원내용
점포환경개선	전시대, 진열대, 냉장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(점포 내 도배, 도색, 바닥공사, 조명공사 등) ※ 점포 외부 보수 지원 불가
주방환경개선	미세먼지 저감시설, 어닝, 닥트공사 및 좌식→입식테이블 교체 등 ※ 전기전자제품, 기계설비, 가구집기 등 자산 취득성(처분 가능한) 품목 지원 불가
시스템개선	CCTV,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시스템 신규설치,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※ 기존 시스템 교체 및 추가 설치 지원 불가

※ 유의 사항

-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
- 입식 테이블·의자 세트, 진열장 교체(음식점업 관련 지원)
- 주업종과 직접 관련된 업소용 냉장고, 식기세척기, 이미용 의자 지원 가능
- 시설개선비의 20%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, 부가세 등은 자부담

예시1) 사업비 800만원(부가세포함) : 보조금 600만원 지원(부가세포함, 80%) 자부담 260만원  
예시2) 사업비 750만원(부가세포함) : 보조금 600만원 지원(부가세포함, 80%) 자부담 150만원  
예시3) 사업비 600만원(부가세포함) : 보조금 400만원 지원(부가세포함, 80%) 자부담 100만원

### 3. 지원신청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**2023. 8. 07.(월) ~ 8. 21.(월)까지**

나 신청서 접수

- 온라인(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<https://www.losims.go.kr>)
- 방문 접수 : 당진시청 8층 지역경제과 (041-350-4014)

다. 제출서류

- ① 지원신청서 1부 (붙임 서식)
- ② 업소소개서 1부 (붙임 서식)
- ③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부 (붙임 서식)
-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(붙임 서식)
-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⑥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
- ⑦ 매출액 증명서(전년도) 1부
  - ◆ 과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간이과세자 포함)
  - ◆ 면세사업자 :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
- ⑧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
  - ◆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(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)
  - ◆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종업원이 없는 경우)
- ⑨ 표준견적서(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, 비교견적 첨부) 1부
- ⑩ 건축물대장(점포면적 등 확인용) 1부
- ⑪ 지방세 납세 증명서(완납 증빙 필요/ 체납, 미납 인정불가) 1부

### 4. 지원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

가. 지원자격

-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

※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확인

-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

나. 지원제외

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 **【붙임1】**

-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

-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)

- 공고일 기준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,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
- 연매출액 증빙 불가 업체(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)

- 사업자 변경(업종, 등록번호 등) 및 사업자 이전(예정) 업체
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
- 시설개선비 자기 부담 비용(20%) 미수용 업체

- 2023. 11. 17.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업체

-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.유사 사업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업체

## 5. 지원자 선정 및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

가. 자체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심사, 선정

- 1차 : 담당부서(지역경제과) 심사(서류 및 현장)

- 2차 :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

나. 신청업소 및 사업의 적격성, 효과성,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세부 심사

기준에 따라 심사(세부 심사 기준 붙임 참조)

다.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

○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**공사완료 확인 후 사후 교부함**  
(대금지급 사후 납부가 가능한 공사업체로 선정할 것)

○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

○ 완료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사 전, 공사 도중 사진 필수 확보 할 것

○ 신청자 본인이 운영하는 공사업체를 이용할 수 없음

○ 공사업체는 해당 공종 시공 자격이 있어야 함

○ 공사대금 납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에 따른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

○ 대상자 선정 후 주요 사업내용 변경 원칙적 불가

○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**일정기간(2년 이상)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,**  
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 
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
※ 예외: 영업부진,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, 지위승계로  
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

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소방·방화 시설에 부합하는 환경개선을 추진하여야 함(방염벽지 등)
- 시설 개·보수는 **관련 법령(건축법, 식품·공중위생법 등)을 준수**하여야 함
- 대상자 선정 후, 주요 사업내용 변경 불가하며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**사전승인**을 받아야 함
- 보조금 교부를 위한 **별도 계좌 개설 또는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** 자부담금 입금후 공사후에 **보조금전용 입출금통장**에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함  
라.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 안내
- 보조금 교부신청(선정통지 후 7일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제출)
  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
    - ※ 사업신청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지원 결정액으로 보완·수정하여 제출
  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  -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  - 보조금전용 입출금통장 사본(대표자 명의), 자부담금 입금내역 통장면 사본
    - ※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제출
-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, 환경개선 시행(~'23.11.17.까지)
- 보조금 지급(시→소상공인) 및 공사업체 대금 납부(소상공인→공사업체)
  - 완료보고에 따른 현장확인 후 7일 이내 보조금전용통장으로 보조금 입금
  -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량 감소, 불용액이 있는 경우 등 당초계획 보다 사업이 축소된 경우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지급
    - ※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음
  - 공사업체에 소요금액(부가세포함) 입금 후, 계좌이체영수증 확보

## 6. 기타사항

- 가.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나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
다.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  
라.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**행정안전부 예규11호**)에 따르며,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
- 마.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.
- 바.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(041-350-40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르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<비고>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

## 붙임2

##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<b>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</b>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소상공인정책자금 용자제외 업종 준용

평가항목	평가지표		평 점				
			매우 탁월	탁월	우수	보통	미흡
평가기준							
사업계획 (30점)	계획 적정성	사업계획의 적정성, 명확성, 추진의지	15	12	9	6	3
	타당성	추진내용과 소요 비용 등의 적정성	15	12	9	6	3
경영현황 (70점)	연매출 기준	점포 연매출 기준	15	12	9	6	3
			3천만원 미만	3천만원 이상 ~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 ~1억원 미만	1억원 이상 ~3억원 미만	3억원 이상
	업력 현황	사업영위기간	15		10		5
			20년 이상		15년		10년
	시설 현황	점포 면적	15	12	9	6	3
			33㎡ 이하	99㎡ 이하	165㎡ 이하	231㎡ 이하	232㎡ 이상
		점포 형태	10			5	
			임차			자가	
	일자리 현황	상시근로자수	15	12	9	6	3
		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	0명	1명	2명	3명	4명
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		1명 이하	2~3명	4~5명	6~7명	8명 이상	
가산점 (6점)	착한가격 업소		3				
	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		3				
합계	106	※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, 가산점은 최대 6점 인정 ※ 동점 시 국세(소득세)+지방세(재산세) 납부 세액이 낮은 신청인 우선					